◘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강성호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고령화에 따른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준비 수준이 미흡함. 이에 노후소득의 안정을 위해 소득계층별로 필요노후소득 수준을 추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원별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후준비의 필요성 및 그 수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은퇴 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 제도 및 금융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게 될 것임.

■ 선진국들은 이미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노후소득보장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임.

○ OECD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은퇴자의 필요노후소득[1] 수준은 퇴직 직전 소득의 70~80%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40%[2]의 소득대체율을 충당한다면,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30~40%를 충당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균소득자는 국민연금으로 25~30%의 소득대체율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적연금 수준은 30~40% 수준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

1)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은퇴 후 소득 수준을 의미함. 그러나 이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연금학자들의 경우 근로시기의 평균소득 대비 은퇴시기의 연금소득과 같이 소득대체율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2)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8년 이후 가입하는 평균소득자는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40%를 보장받음.

■ 그 동안 고령층의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어졌으나 노후준비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소득원별 역할 분담 논의는 찾아보기 힘듦.

○ 특히, 본고는 노후 삶의 질까지 고려하여 노후보장 수준을 논한다는 점에서 노인빈곤 논의와 다르며,

○ 중산층 개념[3]을 활용하여 필요노후소득 수준을 추정하고 가구 내 가구원 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및 소비 격차를 1인 가구 기준으로 단위를 표준화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요노후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공·사적 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원의 역할 분담을 소득계층별로 논하고자 함.

2. 노후준비 실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리스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사적 부문 모두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고령가구는 소득 및 소비지출 수준 모두 전체 가구의 65% 내외로 경제적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고령층의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주요 이유로는 고령층에 대한 복지 수준이 낮고 노후준비의 주요 소득원인 공·사적 연금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중이 2026년에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게 되어 고령사회에 직면할 것이고, 206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65세 이상 인구는 1990년에 전체인구의 5.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현재 12.7%(638만 6천명)이며, 향후 2030년 24.3%, 2060년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고령화로 인해 소득 및 건강 측면에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사적 부문 모두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OECD 기준에 의하면, 중위가구소득의 50~150% 소득을 가진 가구를 의미함.

○ 통계청(2013)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38.6%, 건강문제는 35.5%로 나타남.

〈그림 1〉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6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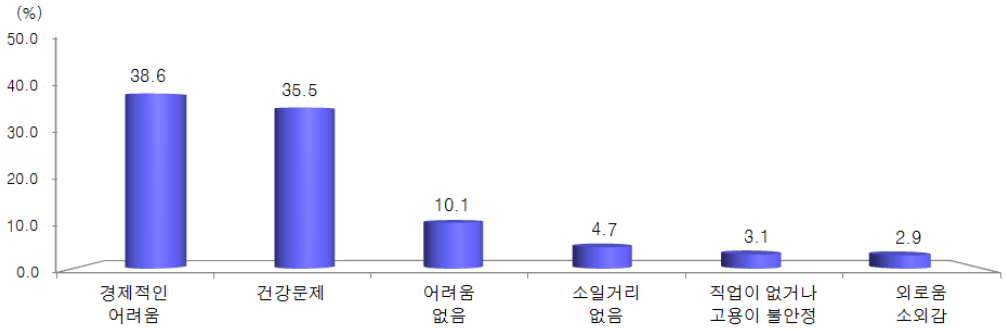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3).

○ 그러나, 공적 부문은 추가적 복지재정 투입 여력 약화로, 보험산업은 위험률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령화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움.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 대 수준에 머물고 있고, 20~30년 후에는 1~2% 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복지재정을 감내할 경제적 여력은 줄어들고 있음.
- 또한 고령자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 보유로 위험률이 높고 그 측정도 어려워 보험산업의 대응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 노인가구의 경제상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수준 모두 전체 가구의 65% 내외여서 경제생활 수준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69만 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인 416만 원의 64.7%였으며, 월평균가계지출은 208만 원으로 전국가구 평균가계지출의 63.7% 수준임.

○ 1인당 기준[4]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들 가구의 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4.4%, 가계지출은 83.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4) 소득 및 소비를 가구원 수로 나누어 산출함.

〈표 1〉 60세 이상 가구 및 전체가구의 가계수지 비교(2013년)

(단위: 명, 세, 월 천원, %)

구분	60세 이상 가구[1](A)		전국가구(평균, B)	
		1인당 기준		1인당 기준
가구원 수	2.49	-	3.25	-
가구주 연령	68.65		49.66	
소득	2,692 (64.7)	1,081 (84.4)	4,162	1,281
경상소득	2,534 (63.0)	1,018 (82.2)	4,025	1,238
가계지출	2,079 (63.7)	835 (83.2)	3,262	1,004
소비지출	1,600 (64.5)	643 (84.2)	2,481	763

주 : 1) 전국 2인 이상 가구에 대해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2) ( )안의 수치는 전국가구의 해당 변수 값에 대한 60세 이상 가구의 해당변수 값 비율임.
자료 : 통계청(2014)을 재구성함.

■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이하 '노인가구')는 44.9%였으며, 이들의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37.2%로 가장 많고, 다음은 '예금・적금・저축성보험(23.7%)', '부동산 운용(13.9%)' 순이었음.

○ 공적연금(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은 노후소득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나 향후 재정문제로 인해 급여 수준이 줄어들 것이 예견된다는 점에서, 사적연금과 퇴직금이 10%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예・적금, 부동산 등도 노후소득원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나 노후자산으로 특화된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역할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노인가구의 55.1%, 전체 가구의 27.1%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노인빈곤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후소득원별 목표설정이 요구됨.

〈표 2〉 노후 준비방법(가구주, 2013년)

(단위: %)

구분	준비하고 (되어) 있음	소계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2]	사적연금[3]	퇴직금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등	기 타
전체[1]	72.9	100.0	52.5	7.8	11.3	4.6	17.4	5.3	0.6	0.4
65세 이상	44.9	100.0	37.2	12.6	4.9	5.1	23.7	13.9	0.2	2.5

주 : 1) 조사대상이 19세 이상 가구주임. 2)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3) 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자료 : 통계청(2014).

■ 노후준비는 저연령일수록 미흡하고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지기는 하나 그 준비가 늦을수록 노후생활의 어려움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결혼, 출산 등으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는 30대의 경우 노후준비 '위험' 등급이 35%로 가장 높음.

○ 은퇴를 앞둔 50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 '위험' 등급은 20.44%로 가장 낮았으나, 50대 역시 '주의' 단계의 비중이 65.78%에 달해 재무 영역 등 은퇴 준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림 2〉 연령별 노후준비 수준 분포

(단위: %)

자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4).

■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준비가 부족한 이유로는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층에 대한 복지수준이 낮고 노후준비의 주요자산인 공·사적 연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2007~2012년 사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증가율(32.1%)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그림 3〉 참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9.3%로 OECD 국가(평균 21.9%) 중 두 번째로 낮음.[5)]

○ 또한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6)] GDP 대비 공적연금 급여지출 비중(2009년 기준)이 멕시코(1.4%)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1.7%에 불과하고, OECD 평균

5) http://www.oecd.org/korea/OECD-SocietyAtaGlance2014-Highlights-Korea.pdf.

6) 공적연금의 성숙기는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입 후 약 40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은 1988년으로 26년에 불과함.

인 6%에 미치지 못함(〈그림 4〉 참조).

○ 한편, 공적연금을 뒷받침할 사적연금도 활성화되지 못해 가입률 및 유지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7)]

○ 그러나, 장기적으로도 GDP 대비 공적연금의 급여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8)]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2007년~2012년 사이 실질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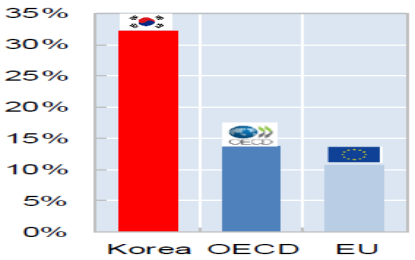

자료: http://www.oecd.org/korea/OECD-SocietyAtaGlance2014-Highlights-Korea.pdf.

〈그림 4〉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중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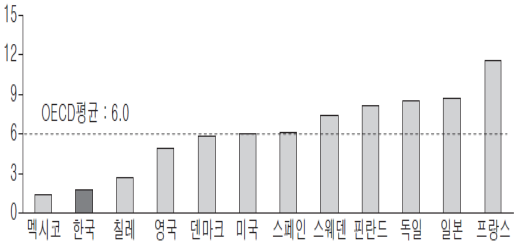

주 : 공적연금 지출의 GDP 대비 비중, 2009년 기준.
자료 : 이근태 · 고가영(2013).

3. 은퇴 후 필요노후소득 수준 및 충분성 검토

은퇴 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노후소득 수준을 소득대체율 관점에서 추정한 결과, 저소득층은 185.1%, 중산층은 71.4%, 고소득층은 29.1%로 추정됨. 즉, 저소득층은 자신의 보유소득 수준보다 1.85배 정도 되어야 중산층 노인가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중산층 이상 노인가구는 해당 가구의 모든 가용 노후소득원을 활용할 경우 평균적으로는 필요소득대체율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중산층의 46.6%는 필요소득대체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한편, 연금소득만으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충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어떤 소득계층도 이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다른 소득원과 연계하여 노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7) 이태열 외(2014).
8) 보건복지부(2013).

가. 필요노후소득 수준 정의와 논의 방향

■ 은퇴 후 필요노후소득 수준은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사회 · 경제적,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필요노후소득은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은퇴 후 소득 수준을 의미하나, 연구자마다 다르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9)]

○ 다만, 필요노후소득(은퇴자금의 충분성)을 논의한 연구들은 대부분 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왔으며,[10)]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7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11)]

■ 본고에서는 소득계층별 필요노후소득 수준을 소득대체율 형태로 추정하고 그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소득원별 역할 분담을 논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노인가구의 평균소비성향(가구소비/가구가처분소득)을 중산층 노인가구의 평균소비성향과 비교하여 노후소득 수준의 충족 여부를 살펴봄.

- 필요노후소득 수준에 대한 정의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평균소비성향을 활용하여 소득대체율을 산출함.[12)]

○ 노후소득원으로 지속될 수 있는 소득원별(근로소득, 공사연금소득 등)에 대해 논의하고, 모든 소득계층에서 필요노후소득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 준비 방향을 논함.

---

9) 원종욱(2000), 여윤경(2002), 석재은(2003), 안종범 · 전승훈(2005), 임병인 · 강성호(2005), 류건식 외(2009), 강성호 · 이지은(2010), 백화종 외(2011), OECD(2011), OECD(2013), Scholz et al.(2009) 등을 참고하기 바람.

10)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대체율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설문조사(예, '은퇴 후 적정 혹은 최소 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 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도 있으나, 설문조사에 의한 적정소득은 조사시점 및 조사방법에 따라 유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대체율 방식을 많이 활용됨.

11) 연구자마다 다른 필요 소득대체율을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분석가정 및 분석자료의 차이에 기인함. 즉, 경제, 인구, 사회학적 가정 차이, 실증조사자료 활용 혹은 시뮬레이션 방법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12) 평균소비성향을 활용한 필요 소득대체율 관련 연구는 강성호 · 이지은(2010)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계층별 필요노후소득 수준 및 충분성 분석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접근함.

○ 중산층[13] 노인가구를 추정해 내고(1단계), 이들이 보유한 소비를 1인 노인 기준으로 표준화하여(2단계) 소득계층별로 필요노후소득대체율을 추정함(3단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후소득원을 활용하여 노인가구가 확보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여(4단계) 이것이 필요노후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지를 살펴봄(5단계).

〈표 3〉 분석단계별 분석내용

구분	분석 단계	분석내용
중산층 정의 및 분석대상	1단계	• OECD 기준에 의해 중위가구소득의 50~150% 소득을 가진 가구 중 노인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필요노후 소득 추정	2단계	• 중산층 노인가구의 소비 수준 추정(균등화 지수적용[1]) - 중산층 노인가구의 균등화소비 수준을 노인 1인의 필요소비 수준으로 간주
	3단계	• 소득계층별 노인가구의 필요노후소득대체율 추정 - '중산층 노인가구의 소비/소득계층별 노인가구의 가처분소득'으로 소득계층별 노인가구의 필요노후소득대체율 추정
노후소득 충분성 분석	4단계	• 노후소득원(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사적 연금소득 등)별 실질 소득대체율 추정 - 소득계층별 노인가구의 '소비/가처분소득'으로 소득계층별 노인가구의 실질 소득대체율 추정
	5단계	• 필요노후소득 대비 노후소득원 준비 정도로 노후소득의 충분성 판단

주: 1) 가구균등화 지수는 OECD 기준에 의해 소득 혹은 소비를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함.

나. 소득계층별 필요노후소득 산출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2013년 기준)를 활용하여 노인가구의 소득계층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가구의 42.2%가 중산층이고, 이는 전체 가구의 8.2%에 해당함.

○ 노인가구는 비노인가구에 비해 빈곤층 비중이 상당히 높고 중산층과 고소득층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4〉 참조).

13) 중산층을 표준집단으로 선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책이 중산층을 제고하는데 맞추어져 있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중산층이 아닌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소득 및 소비를 고려하게 되면, 극빈층과 부유층의 과소 혹은 과다 소득 및 소비 수준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음.

〈표 4〉 노인가구여부별 소득계층 현황

(단위: %)

구분	비노인가구	노인가구	전체
빈곤층	13.3 (10.7)	43.2 (8.4)	19.1
중산층	56.6 (45.6)	42.2 (8.2)	53.8
고소득층	30.1 (24.3)	14.6 (2.8)	27.1
전체	100.0 (80.6)	100.0 (19.4)	100.0

주: 1) 소득계층 구분에 활용한 소득은 소득인정액(가처분소득+순자산의 소득환산액)이며, OECD 기준에 의해 중위가구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이상은 고소득층으로 분류함.
2) 가처분소득은 가구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조세+사회보험료)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였으며, 순자산의 소득환산액은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1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3) ( ) 안은 전체 가구 수 대비 비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2013년 기준)를 활용하여 산출함(이하 동일).

■ 중산층 노인가구의 균등화소비 수준은 연평균 892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을 산출하면 빈곤층은 185.1%, 중산층은 71.4%, 고소득층은 29.1%로 추정됨.

○ 필요소득대체율은 중산층 노인가구의 균등화소비지출인 892만 원을 각 소득계층별 균등화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함(〈표 5〉 참조).

○ 빈곤층 필요소득대체율 185.1%가 의미하는 바는, 빈곤 노인가구가 중산층 노인가구만큼 소비하려면 현재 가처분소득의 1.85배가 필요함을 의미함.

○ 중산층의 필요소득대체율 71.4%는 선행연구들에서 평균소득자의 필요소득대체율(대략 70%)과 유사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한편, 노인가구의 현재 소비성향은 빈곤층 96.1%, 중산층 71.4%, 고소득층 54.3%로 추정되므로 빈곤 노인층은 필요 소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5〉 노인가구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

(단위: 연 만 원, %)

소득계층구분	균등화 가처분소득(A)	균등화 소비지출(B)	평균소비성향	필요소득대체율[1)]
			B/A×100	'892'/A×100
빈곤층	482	463	96.1	185.1
중산층	1,250	892*	71.4	71.4
고소득층	3,064	1,664	54.3	29.1

주: 1) 중산층 노인가구의 균등화소비지출인 892만 원(*)을 각 소득계층별 균등화 가처분소득(A)으로 나눈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임.

14) 보건복지부(http://basicpension.m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2.jsp).

■ 노인가구의 소득원을 살펴보면, 가구 수 대비 보유가구 수 비율인 '보유율' 기준으로는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높고, 소득원 총액 대비 소득원별 금액 비율인 '점유율' 기준으로는 근로·사업소득이 가장 높음.

○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보유율 및 점유율이 증가하나, 공·사적 이전소득은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보유율 및 점유율이 감소함.

○ 특히, 공·사적 이전소득은 보유율에 비해 점유율이 상당히 낮으므로 실질적으로 이전소득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줌.

〈표 6〉 노인가구의 소득원 보유율 및 점유율

(단위: %, 월 만 원)

소득계층 구분	보유율[1]				점유율[2]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경상소득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빈곤층	35.6	12.1	98.8	68.3	100.0 (166)	30.9 (547)	2.4 (126)	44.3 (13)	30.3 (242)
중산층	65.8	40.1	89.3	55.6	100.0 (195)	80.5 (1,411)	9.8 (733)	24.4 (139)	13.8 (344)
고소득층	72.1	58.4	81.5	30.7	100.0 (131)	94.1 (3,768)	19.0 (2,176)	19.7 (717)	3.5 (744)

주: 1) 보유율 = 보유가구 수/가구 수 2) 점유율 = 소득원별 금액/소득원 총액(균등화 소득기준으로 산출).
3) ( )안은 균등화 소득액임. 4) 모든 소득계층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함.

■ 노후소득 격차는 주로 근로능력(근로·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의 축적(재산소득)에 의해 나타나나, 공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이 이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 격차를 증대시킴(〈표 7〉 참조).

〈표 7〉 중산층 노인가구 대비 소득계층별 소득원 격차율

(단위: %)

소득계층구분	경상소득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빈곤층	-61.2	-82.9	-90.7	-29.7	-14.8
고소득층	167.1	197.0	415.8	115.9	-32.6

주: 1) 중산층 노인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소득원들을 표준적인 노후소득원으로 간주하여 중산층과 해당 소득계층간 점유율의 격차를 비율로 산출함. 즉, '(소득계층별 소득원별 금액-중산층의 소득원별 금액)/중산층의 소득원별 금액×100'으로 산출함.
2) 모두 균등화 소득기준으로 산출함.

○ 빈곤층은 모든 소득원에서 중산층이 보유한 금액에 미달함.

- 특히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보다는 덜하지만 공・사적 이전소득도 중산층에 미치지 못하여 소득격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빈곤층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중산층 수준 이하로 나타난 이유는 공적이전소득의 대부분인 공적연금이 소득비례형태로 설계되어 있고[15], 빈곤의 대물림 현상[16]으로 인해 사적이전소득도 많지 않기 때문임.

○ 고소득층은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원에서 중산층이 보유한 금액을 초과함.

- 특히 재산소득은 다른 소득원에 비해 중산층보다 약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사적이전소득은 중산층보다 적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은 자녀세대로 지원하는 금액이 많다는 것을 보여줌.

다. 소득계층별 노후소득 충분성 검토

■ 중산층 이하 노인가구에서는 추가적으로 가처분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필요소득대체율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빈곤층의 경우는 현재 가처분소득의 85.1%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필요소득대체율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중산층의 경우에도 필요소득대체율 71.4%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46.6%[17]로 분석되어 중산층 모두가 필요소득대체율을 충족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보유하고 있는 소득원을 대상으로 충분성을 살펴본 결과, 연금소득만으로는 필요소득대체율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하므로 다른 소득원과 연계하여 노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연금소득은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노후소득원으로서 안정성이 높으나, 전반적으로

15)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비례형 공적연금이므로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연금 수준도 높음.

16) 저소득층의 자녀세대는 대부분 저소득층이 되는 현상임. 이로 인해 저소득층 자녀가 저소득층 부모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수준도 낮은 것이 일반적임.

17)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시자료(2013년 기준)에서 중산층 노인가구 중 필요소득대체율 71.4% 이하인 비율이 46.6%로 나타남.

필요소득대체율을 충족시키기에 낮은 상태에 있음.

- 연금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빈곤층 40.2%, 중산층 22.3%, 고소득층 18.1%로 나타나 연금소득만으로 필요소득 수준을 충족시키려면 각각 144.9%, 49.1%, 11.0%의 소득대체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8〉 소득원별 필요노후소득 기여도 및 충분성

(단위: %)

소득 계층	필요소득대체율 (A)	소득원별 실질 소득대체율(B)[1]			부족분(A-B)
		근로 · 사업소득	연금소득[2]	기타[3]	
빈곤층	185.1	26.1	40.2 (144.9)	33.8	-85.1
중산층	71.4	58.6	22.3 (49.1)	19.1	28.6
고소득층	29.1	71.0	18.1 (11.0)	10.9	70.9

주: 1) 보유 소득원 각각에 대해 소득대체율로 전환함.
2) 공 · 사적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대체율을 산출한 것임. 사적연금의 경우 장지연 외(2008)의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개인연금 수급액 비율을 적용함.
3) 경상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원(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임.

■ 또한, 소득원들 중 근로 ·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은 연금소득과 같이 은퇴 후 생애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으로서 한계가 있음.

○ 근로 · 사업소득 중 가구 내 젊은 가구원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은 분가 후 사라질 우려가 있고, 또한 초고령기(예, 75세 이상)를 지나면서 크게 줄어들 수 있음.

- 노인가구일 경우에도 가구 내 젊은 가구원의 근로로 발생하는 소득 수준(사적이전소득과 다름)은 가구 전체 경상소득의 29.4%로 추정됨.[18]
- 65~74세의 연간 근로 · 사업소득은 1,673만 원이나, 75~84세는 이보다 44%정도 줄어든 940만 원이고, 85세 이상은 58%정도 감소한 699만 원임.[19]

○ 자녀세대로부터 들어오는 사적이전소득도 자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 있음.

○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는 노후소득원들로 인해 노후생활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안정적 소득원으로 대체 혹은 추가적 확보가 필요함.

18) 장지연 외(2008).

19)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시자료(2013년 기준)를 활용하여 분석함.

4. 결론 및 향후 과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예, 연금소득) 확보가 중요함.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득원들 간 노후소득보장의 목표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이로 인해 연금자산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결정된다면 공·사적 연금의 역할 분담 수준을 논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이를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필요소득대체율은 높으며, 중산층 이하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득원으로 자신의 노후소득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함.

○ 소득계층별로 보면 빈곤층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처분소득의 85.1% 만큼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해야 중산층에 상응하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중산층의 경우에도 초고령기(예, 75세 이상) 이후 근로·사업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노후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금소득과 같은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됨.

○ 특히, 초고령기로 접어듦에 따라 근로·사업소득이 줄어들어 장수리스크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 고령층은, 연금소득과 같은 안정적 소득원을 미연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 있음.

■ 첫째, 소득원들 간 노후소득보장의 목표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필요노후소득 수준 모두를 연금자산으로만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연금 외 다른 자산소득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되어야 함.

○ 즉, 근로·사업소득 및 기타자산소득 외 보유자산(주택, 농지 등)의 역모기지화 등이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충당할 것인지에 따라 연금의 역할 수준이 결정될 수 있음.

■ 둘째, 연금자산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결정된다면, 공·사적 연금의 역할 분담 수준을 논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5~30%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목표소득대체율에 부족한 부분은 사적연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고, 그만큼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 셋째,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득계층별 정책이 요구됨.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적연금 가입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적연금 미가입자로서 사적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지원된다면, 공·사연금의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정책이 될 것임(예, 독일의 리스터연금).
- 전업주부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활동 배우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예, 미국의 IRA 제도[20]).
- 두루누리 사회보험[21]에 대한 혜택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중산층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됨.

-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이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대해 추가적인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직종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22]
- 또한 현재 12%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인연금 세액공제율을 과세소득이 있는 중위소득층 이하에 대해 확대적용함으로써 소득보장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적립분)도 퇴직금 수령시점에서 연금전환을 의무화한다면, 추가적인 사업주 부담 없이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있음.[23]

---

20) 오승연(2014).

21)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 적립금의 10%만 지원되어 현 두루누리 사업(50% 지원)에 미치지 못함.

22) 최근 사적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36만 원)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지원됨.

23)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등에 의해 최소 3년간의 퇴직급여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수급권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류건식 2014).

〈참 고 문 헌〉

강성호 · 이지은(2010),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연구』, 정책보고서 2010-2, 국민연금연구원.

류건식(2014),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 방향』, 국회연금정책세미나, 보험연구원.

류건식 · 이창우 · 김동겸(2009),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연구보고서 2009-4, 보험연구원.

백화종 외(2011), 『한국인의 은퇴준비와 노후소득 수준의 적절성 평가』.

보건복지부(2013),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4), 『한국인의 은퇴준비』.

석재은(2013),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 연구」, 『한국인구학』 제26권 제1호, pp. 79~113.

안종범 · 전승훈(2005), 「은퇴자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15, pp. 5-33.

여윤경(2002), 「목표소득대체율을 통한 은퇴소비추정」, 대한가정학회지 40(3), pp. 83-97.

오승연(2014), 『미래 여성노인의 노후준비 실태와 시사점』, 고령화리뷰, 보험연구원.

원종욱(2000), 「국민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분석」, 보건복지포럼 45, pp. 32-42.

이근태 · 고가영(2013),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 완화, 취약계층 빈곤율은 증가』,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이태열 · 강성호 · 김유미(2014), 『공 · 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임병인 · 강성호(2005), 「국민 · 퇴직 · 개인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보험개발연구』, 제16권 제3호 통권 제46호, 보험연구소, pp. 89-121.

장지연 · 부가청 · 이혜정 · 신현구 · 이철희 · 장숙랑 · 조성일 · Lisa F. Berknam(2008),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연구보고서 2008-03,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보도자료(2013), 2013년 사회조사 결과.

_____(2014), 2014 고령자통계.

http://www.oecd.org/korea/OECD-SocietyAtaGlance2014-Highlights-Korea.pdf.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_____(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Scholz, John Karl and Ananth Seshadri(2009), "What Replacement Rates Should Households Use?", Working Paper WP 2009-214,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